

수원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86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86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17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희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강의

변론 종결2021. 3. 4.

판결 선고2021. 4. 15.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179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553,904,6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3,904,6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2. 14. 접수 제2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4. 2. 17.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538,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 청구로써, ①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538,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최소하여 줄 것과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이하 '①청구'라 한다), ② 청구취지 나.항 기재 청구를 하였다(이하 '②청구'라 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②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①청구 중 일부 패소된 부분을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②청구(청구취지 나.항 기재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②청구에만 관련된 부분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13행의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1호증의 1,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13 내지 14행의 "① 피고는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8,904,681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① 피고는 제1부동산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이 완료된 후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층이었던 관계로 환급금 8,904,681원을 지급받은 사실(2019. 8. 29.자 감정평가서 제5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2 내지 3행의 "④ 2019. 8. 당시 제1부동산의 시가는 538,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아파트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를 "④ 당시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경의 이 사건 아파트 시세는 745,000,000원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의 1의 기재)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제1부동산의 당시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745,000,000원과 피고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은 8,904,681원을 더한 753,904,681원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5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한 손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제1부동산의 가액인

753,904,681원에서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의 가액 200,000,000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0,000,000원 + 50,000,000원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B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3,904,681원(= 753,904,681원 - 200,000,000원)을 가액배상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553,904,6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53,904,6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 전액이 2013. 8. 12.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K의 2020. 11. 17.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채무는 2014. 12. 15.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주문 제1의 각 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

별지